# **POLICY BRIEF 2021**

2021. 12. 13. vol.50

# 2021 정책브리프

100000 100 Ollie

0000111111 0101 0 0 01110 0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0 011

2 0000111000000 101010 111000000

01110 1010100 010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 > www.jthink.kr

연구진 | 이주연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지훈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 01110 01110 **POLICY BRIEF 2021**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2021. 12. 13. vol.50

# CONTENTS

- 1.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필요성
- Ⅱ.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 1. 시설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자립수준평가
  - 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 Ⅲ.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방향
  - 1.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 2.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발행인\_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 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I .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sup>1)</sup> 자립 지원의 필요성

- 아동학대, 비행·가출, 부모 이혼·실직 및 유기, 양부모 사망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 이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여명에 이름. 이중 매년 2,600명이 시설을 퇴소하고 시설 보호가 종료됨
  - 2019년 기준 전북지역 복지시설에서 보호 받는 아동은 682명이며, 이중 132명(연령만기퇴소 60명, 연장종료 72명)이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함(2019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 아동권리보장원, 2020.12.)
-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자립 과정에서 경제·정서·사회적 자립 역량 부족으로 4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40%이상은 연락 두절되어 제대로 된 지원 조차 받지 못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실은 매우 열악함
-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을 양적·질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현실적 장벽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 자립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11년 8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보호종료 아동 대상 자립지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2021년 7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로 3대 기본방향(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강화,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두터운 사후관리체계 구축)과 6대 주요과제를 추진함
- 한편, 전북은 지역차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실태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전북 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자립 욕구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자립지원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2008년부터 4년마다 복지부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나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부족함
  -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 증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주거지 원 등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시적 지원에 머물러 있음
- ✓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의 효과는 단시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사업 및 서비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종료 전부터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 시설별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 최 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정책동향을 토대로 전북지역 차원의 보호종료아동 대상 실질적 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함

<sup>1)</sup>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양육·보호받다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 만18 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해당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의미함. 보호종 료아동의 범위(동법 시행령 제38조)는 보호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5년 이내의 아동으로 규정함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 Ⅱ.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 1. 시설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아동 현황 및 자립수준평가

### ■ 시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 ✓ '20년 기준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은 654명, 전국 보호아동(10,102명)의 6.5% 차지함
- 보호아동 654명 중 가정위탁보호가 389명(59.5%)으로 가장 많고, 양육시설보호 175명 (26.8%), 공동생활가정 보호 90명(13.8%)으로 나타남. 16~18세는 양육시설 보호 비율이 높고, 보호연장아동은 가정위탁 보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표 1] 전북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현황(2020)

구분			보호아동 현황		
<b>十</b> 世	16~18세	19세 이상	연장아동	일시중지아동	소계
양육시설	120(68.6)	46(26.3)	9(5.1)	_	175(100.0)
공동생활	38(42.2)	43(47.8)	9(10.0)	-	90(100.0)
가정위탁	147(37.8)	79(20.3)	162(41.6)	1(0.3)	389(100.0)
합계	305(46.6)	168(25.7)	180(27.5)	1(0.1)	654(100.0)

자료: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1년 10월 발행).

- ✓ '20년 기준 전국 보호종료아동은 총 2,368명, 전북 보호종료아동은 152명(6.4%)으로 경기 (388명), 서울(276명)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음
-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은 '17년 134명, '18년 163명, '19년 132명, '20년 152명이며, 시설유형 중 가정위탁보호 비중이 가장 높고, 매년 증가 추세임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18세 만기 퇴소 비율이 높고, 가정위탁은 연장종료 비율이 높음

### \_\_\_\_\_ [표 2] 전국 및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현황

	구분	계	C	가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十正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소계	만기퇴소	연장종료
전국	'20년	2,368	827	536	291	168	112	56	1,373	351	1,022
	'17년	134	61	54	7	11	9	2	62	25	37
전북	'18년	163	59	43	16	19	17	2	85	39	46
인독	'19년	132	44	28	16	14	9	5	74	23	51
•	'20년	152	43	40	3	8	5	3	101	13	88

자료: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1년 10월 발행).

###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준평가

✓ 전북지역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준은 전국 대비 취업과 진학 비율은 낮고, 연락두절 비율(38.7%, 293명)은 높음

### [표 3] 전북 및 전북의 보호종료 아동 중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현황

구분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총 계
전국	1,363 (10.7)	4,860 (38.0)	449 (3.5)	2,762 (21.6)	3,362 (26.3)	12,796 (100.0)
전북	70 (9.2)	155 (20.4)	53 (7.0)	187 (24.7)	293 (38.7)	758 (100.0)

자료: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 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적 욕구

### ■ 조사개요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총 121명(양육시설 90명, 공동생활가정 13명, 가정위탁 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함.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대면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고, 조사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됨

### ■ 주관적 건강 및 심리 상태

- ▼ 최근 한 달 동안 경험한 우울감(총점)은 13.94점으로 '경도수준'으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 연령 대별로는 22세 이상, 그리고 연장종료인 경우와 혈연이 있는 집단에서 우울감 또한 '경도수준'으로 나타남

[표 4[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 점 / 5점 기준)

구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평균
주관적 건강수준	0.0	2.5	32.8	37.0	27.7	3.90

[표 5[ 현재 심리상태<sup>2)</sup>

(단위: 점 / 4점 기준)

								0071
구분	외로움	기분이 울적함	예민, 마음이 불안정	이유 없이 불안함	일이 뜻대로 안 될 것 같음	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함	우울감 (총점)	우울감   (평균)
전체	1.96	1.81	1.85	1.78	3.37	3.17	13.94	2.32

<sup>2) &#</sup>x27;우울감' 척도는 Kessler(2002)의 간편형 우울 척도로 리커트 4점척도(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4점)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함. 총점(24점)을 기준으로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 19~24점은 중도 수준을 의미함.

# POLICY BRIEF 2021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vol.50

### ■ 대학 지학 혀황

- ▼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률은 84.2%로 연장종료집단과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등록금 마련방법) '장학재단 장학금'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학의 장학금' 순으로 많았음

### [표 6] 대학진학 여부 및 등록금 마련 방법

(단위: %, 케이스%)

	진학C	여부		등록금 마련 방법 (중복응답)							
구분	비진학	진학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재단 대출	자립 정착금	시설후원	은행대출	대학 장학금	가족지원	아르바이트	
전체	15.8	84.2	97.0	9.9	5.9	1.0	1.0	26.7	3.0	5.9	

✔ (대학 재학 중 생활비 마련방법) 기초수급비(65.0%), 자립수당(52.0%), 아르바이트(37.0%), 자립정착금(24.0%)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기초수급이 일부 유예 가능하기에 기초수급비와 매월 지급되는 30만원의 자립수당 활용률이 높았음

### [표 7] 대학 생활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 방법(중복응답)

(단위: 케이스%)

구분	도·시·군청 지원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시설후원	가족지원	아르바이트	기초수급비	기타
전체	7.0	24.0	52.0	2.0	9.0	37.0	65.0	6.0

●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68.4%로, 카페/술집 등의 '써빙'이 50%를 차지함.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은 4점 기준 2.70점으로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표 8] 아르바이트 경험률, 종류, 학업병행의 어려움

(단위: %, 점/4점기준)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종류									
경험률	써빙	써빙 PC방 배달 편의점 유흥업소 건설현장 강사 근로장학생									
68.4	50.0	3.0	3.0	15.2	1.5	4.5	1.5	21.2	2.70		

### ■ 취업 현황

- ▼ 현재 취업 한 경우는 33.3%, 취업 준비 중인 경우는 66.7%로 취업 준비 상태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자격증 공부'가 40.7%로 가장 많았고, 구직정보 찾음 22.2%, 직업훈련 16.7% 순으로 나타남
- ▼ 한편, 취준생이지만 취업을 위해 이렇다 할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1.1%로 나타남

### [표 9] 현재 취업상태 및 취준생의 취업을 위한 노력 현황

(단위: %)

취입	성태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취업을 위한 노력 현황						
취업중	취업 준비중	직업훈련 중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하며 경험 쌓기	''''' 기시서다 자으			
33.3	66.7	16.7	40.7	9.3	22.2	11,1		

● (취업 준비 과정 시 어려운 점) '나의 적성을 모름'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직종 관련 경험 부족 19.8%, 취업정보 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 16.0%씩 나타남

### [표 10]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

(단위: %)

취업정보 부족	내 적성을 모름	관련 경험 부족	낮은 급여	학력/기술 부족	기타
16.0	29.6	19.8	7.4	16.0	11.1

### ■ 주거상황

▼ (현재 살고 있는 주거형태) 보호종료아동 절반 이상인 55.0%가 'LH 주거지원'을 지원 받음, 자립지원시설 16.7%, 월세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보호종료아동에게 LH주거지원 사업은 현재나향후 지원서비스 형태 중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나타남

### [표 11] 현재 및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단위: %)

현재 주거형태							향후	후희망하	는 주거형	태		
LH지원	자립지원 시설	전세	월세	기숙사	부모님집	위탁가정 거주	LH지원	공동생활 가정	전세	월세	자가	부모님집
55.0	16.7	6.7	10.8	6.7	1.7	2.5	28.4	0.9	28.4	4.6	36.7	0.9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72.3%가 이용경험이 없었고, 응답자의 27.7%만이 서비스 수혜를 받음
- ▼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정보를 몰라서'가 60.3%로 가장 많았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이용 의향으로 81.5%가 희망함

### [표 12]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이용	경험		⇒ 이용하지 않은 이유				⇒향후 이용의향		
있음	없음	정보를 몰랐음	자유롭지 못함	거리가 멀어서	기타	없음	있음		
27.7	72.3	60.3	4.1	15.1	20.5	18.5	81.5		

### ■ 경제상황

▼ (자립금 수령 현황) 보호종료 당시 디딤씨앗통장(CDA)은 평균 499만원, 후원금은 460만원, 월평균 소득은 95만원으로 양육시설 등 시설 퇴소 직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퇴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POLICY BRIEF 2021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vol.50

### [표 13] 자립금 수령 현황

(단위: 만원)

	디딤씨앗통장(CDA)		후원금			월 평균 소득			
평균	<u> </u>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평균	중위값	최빈값
499	.4	352.5	300	460.1	300	200	95.0	80.0	80

✓ (월 생활비 지출내역) 평균 약 91만원을 지출하고 있음. 이중 식비가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저축(16.1%), 교통/통신비(14.9%), 주거비(1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 14] 생활비 지출항목

(단위: 만원, %)

1)주거비	2)저축	3)식비	4)교통/통신	5)교육비	6)보건의료	7)친목활동	8)여가생활	9)기타잡비	총지출
13	15	24	13	4	2	9	3	9	91
14.3	16.1	26.1	14.9	4.9	1.7	9.6	3.0	9.4	100.0

### ■ 어려움과 고민·걱정거리 및 사회적 지지체계

- ✓ (보호종료 후 어려웠던 점) '경제적 어려움'이 23.6%로 가장 높았고, 외로움(18.2%), 취업 (17.9%), 자산관리(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현재 가장 큰 고민과 걱정)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는 전체 응답자의 약 30.0%가 '취업'이라고 응답함.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29.4), 신체/정서 등의 건강문제(15.3%), 학업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현재 미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59.4%로 100명 중 약 60명이 이에 해당함

### [표 15] 현재 가장 큰 고민·걱정거리

ᄀᆸ	구분 전체	성별		연령		종료사유		혈연 여부	
十正		남자	여자	21세⇩	22세습	만기	연장	있음	없음
1위	취업	취업	경제문제	취업	취업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취업
2위	경제문제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취업	경제문제
3위	건강	건강	학업	학업	건강	학업	건강	학업	건강

✓ (보호종료 후 조언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보호종료 후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평균 2.7명으로 시설의 생활지도사 선생님 > 학교 친구/선후배 > 형제/자매 > 자립전담요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16] 보호종료 후 조언/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중복응답)

(단위: 명, 케이스%)

사람 수	혼자 해결	학교 친구/ 선후배	부모님	친척	시설 선생님	형제/ 자매	시설 친구/ 선후배	동네친구	자립전담 요원	멘토	위탁 부모
2.7명	5.8	24.3	18.4	9.7	36.9	20.4	8.7	11.7	17.5	2.9	1.9

### ■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정성 및 정책적 지원 욕구

- ✓ (현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정성) 아동복지법 상 보호종료 연령 만18세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의 적정연령을 최소 19세에서 최대 26세(평균 21세)로 보았음.
- ✓ 보호종료 연령 만 18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설을 퇴소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았음. 이는 홀로서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냄

### [표 17] 보호종료 연령 기준의 적절성

(단위: %, 세)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 적절하지 않다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연령				
작설임	역일에서 끊음	평균	중위값	최빈값		
49.6	50.4	21.17세	20세	20세		

♥ (5년의 자립기간 동안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 1위 국민기초생활수급, 2위 LH전세임대, 3 위 자립정착금. 4위 자립수당. 5위 국가장학금로 현금성지원과 주거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 [표 18] 자립기간(5년)동안 가장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지원서비스

1위	2위	3위	4위	5위
국민기초생활수급	LH전세임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 '19년 기준 자립수준평가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보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39.6%로 전국(31%) 대비 8.6%p가 높음. 시설별로 양육시설과 가정위탁보호는 전국 보다 전북 보호종료아동 수급 비율이 각각 10.6%p, 7%p 높게 나타난 반면,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수급비율은 전국 대비 전북이 6%p 낮았음

### [표 19] 전국 및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준평가 대상자의 기초생활수급 여부 (2019)

구분		전국		전북			
	수급	미수급	총계	수급	미수급	총계	
양육시설	1,479(33.8)	2,892(66.2)	4,371(100.0)	99(44.4)	124(55.6)	223(100.0)	
공동생활	224(41.3)	318(58.7)	542(100.0)	12(35.3)	22(64.7)	34(100.0)	
가정위탁	1,081(26.5)	2,991(73.5)	4,072(100.0)	52(33.5)	103(66.5)	155(100.0)	
합계	2,784(31.0)	6,201(69.0)	8,985(100.0)	163(39.6)	249(60.4)	412(100.0)	

자료: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2020년 12월 발행).

✓ (정책영역별 필요도) 전북 보호종료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을 보면, '현금성 지원'이 3.68 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지원(3.48점), 법률 및 문화 활동(3.3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 20] 정책영역별 필요도

(단위: 점)

현금성 지원	주거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심리·신체건강	법률 및 활동
3.68	3.27	3.48	3.23	3.27	3.34

#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 Ⅲ.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및 정책방향

### 1.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 ■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법적 근거기반 마련 필요

- ▼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규정 상 전북도는 자립지원전담 기관을 설치·운영으로 중앙과의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및 전국 통합 관리 강화가 필요함
- ▼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북도 차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함

### ■ 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의 현실화·내실화 필요

▼ 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교육으로는 자립 이후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을 체험 실습과 현장 위주로 소그룹 교육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강사 초빙 등을 통한 실전과 경험담 위주로 실시될 필요 있음

### ■ 보호종료 5년 이내 기간, 밀착 사후관리를 위한 단계 세분화 위기 수준별 차별화 지원 필요

- 법률로 정해진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종료아동은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있지만, 사후관리 개념 보다는 1년에 1회 근황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이에 보호종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다 면밀하고 실제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을 세분화된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해야 하며, 보호종료아동의 긴급 및 위기 수준별에 따른 관리의 차별화와 맞춤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후관리 매뉴얼과 별도의 예산 투입 및 전문 인력 확충도 필요함

###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 및 전문성·역량 강화 필요

-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시설의 보호아동 대상 자립준비교육 및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의 사후 관리 업무 이외 시설 내 별개의 업무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자립지원전담요원 1인당 관리해 야 할 보호(종료)아동이 적게는 30명 이상 많게는 200명 이상이 넘어 형식적인 형태의 사후관 리인 기본적인 근황 파악에 머물러 있음. 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추가 인력 배치와 담당 사 례 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현 자립전담 업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는 지역단위로 묶어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 담요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함
- ▼ 또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상의 자립 8대 영역별 실천 교육 방법, 자립 지도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자립 지원에 대한 사례회의 및 사례공유와 전문가의 슈퍼비전, 워크숍 등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 심리·정신 건강 지원 강화 및 심리적 지지체계 기반 조성

- ✓ 심리·정신건강 문제를 위한 심리상담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와 인생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원하는 연령까지 지원되어져야 함
- ▼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정서적 지지체계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멘티-멘토 연계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아동간의 자조모임 형성·유지로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도 필요함

### ■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 지원 및 보호종료 취약계층 특화 자립 지원

- ▼ 보호아동과 부모간의 연계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가족 복귀 전 부모역할과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귀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함
- ▼ 시설 등에 보호조치되는 아동 대부분은 학대 피해아동이며, 이 중 많은 비율이 경계선지능으로 판 정·추정되기에 경계선지능 보호종료아동 대상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과 추진체계 및 인프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함

### 2.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 [그림 1] 전라북도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목표별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 정책방향

추진

과제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

### ■ 심리·정신건강 치료 지원 강화

- 전문상담 및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양육시설 임상심리사 공유 배치
-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강화
- 지역·시설 맞춤 퇴소선배그룹과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 혈연가족 및 대안가족 연계·교육 강화
- 퇴소선배와 토크 콘서트

### 자립 단계별 맞춤지원 확대

- 보호아동 자립준비 현실화
-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진로진학 컨설팅
- 초기 자립 지원 강화
  - 자립 초기정착을 위한 생활꾸러미 지급
  - (준)자립생활시설 설치·운영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전북차원의 사례 수 확대
- 취업준비과정 지원확대
- 면접 정장 구입비 및 증명사진 쿠폰지급
- 현장종사자와의 만남 및 멘토 연계
- 지역 기업 연계 우선 채용 MOU체결

###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책 기반 조성

- 추진체계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
- 전북 자립지원전담 설치·운영
- 시설특성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원가족복귀 프로그램 운영
- (그룹홈) 사춘기 보호아동 양육코칭 지원
- 사후관리 예산 지원
- 자립지원요원 역량 강화
  - 자립 지원 업무 역량 강화
  - 자립전담요원 소진 예방·회복 프로그램

### <참고문헌>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2019. 12). 2018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2020. 12). 2019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2021. 10). 2020년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0). 2020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2021).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1. 7. 13).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7. 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별첨자료



**I**think 전북연구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